제 2 5 8 회 거 창 군 의 회 임 시 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(2021.9.6.)

##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

검 토 보 고 서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[전문위원 진 학 성]

#### 의안번호 제2021-74호

# -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-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
나. 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다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#### 2. 예산안 규모

가. 총 괄 (예산서안 p9)

(단위 : 천원)

회계별	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계	775,912,953	688,899,427	87,013,526	12.63
일반회계	701,166,348	619,857,581	81,308,767	13.12
특별회계	74,746,605	69,041,846	5,704,759	8.26

- <u>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</u> 기정예산액 대비 870억 1,352만 6천원이 증액(12.63%)된 7,759억 1,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
  - <u>일반회계는</u> 7,011억 6,6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3억 876만 7천원이 증액(13.12%) 되었음
    - ※ 수정예산으로 코로나 상생지원금 143억 1,049만 7천원 증액과 거창한마당축제 행사비 14억 1,560만원을 감액함
  - **특별회계는** 747억 4,66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억 475만 9

천원이 증액(8.26%) 되었음

## 나. 세입예산(일반+기타특별+공기업특별)(예산서 p10)

(단위: 천원)

		구	분	_		제3회 추가	기정	비교증	
		,	Ľ.	•		경정 예산안	예 산 액	증감액	증감률(%)
		합	계			775,912,953	688,899,427	87,013,526	12.63
		소	: 7	계		701,166,348	619,857,581	81,308,767	13.12
	지	방	세	수	입	33,413,029	33,413,029	0	0.00
일	세	ହ	_	È	입	12,037,741	12,037,741	0	0.00
반 회	지	방	교	부	세	277,517,204	241,295,000	36,222,204	15.01
계 계	조	정	교 부	- 금	나	25,673,831	20,566,677	5,107,154	24.83
	보		조		금	231,976,658	210,433,614	21,543,044	10.24
	보	주수 약	입등나	부기	H 래	120,547,885	102,111,520	18,436,365	18.06
공	기	업	특 별	회	계	45,913,517	41,640,756	4,272,761	10.26
기	타	특	별	회	계	28,833,088	27,401,090	1,431,998	5.23

-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70억 1,352만 6천원이 증액(12.63%)된 7,759억 1,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  - ▶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,011억 6,63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13억 876만 7천원이 증액(13.12%) 되었고,
  - ▶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9억 1,3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,276만 1천원이 증액(10.26%) 되었으며,
  - ▶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8억 3,3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,199만 8천원이 증액(5.23%) 되었음.

다. 세출예산(일반+특별)

		$(e \cdot c \cdot c)$			(11 - 111)	
	구 분 제3회 추가		기 정 예 산 액	비교증감		
	ነ	경정 예산안	예 산 액	증감액	증감률(%)	
	합계	775,912,953	688,899,427	87,013,526	12.63	
٥١	소 계	701,166,348	619,857,581	81,308,767	13.12	
일 반	의회운영위원회	1,023,486	1,023,486	0	0	
회	총 무 위 원 회	355,187,890	321,424,084	33,763,806	10.50	
계 	산업건설위원회	344,954,972	297,410,011	47,544,961	15.98	
공	기업특별회계	45,913,517	41,640,756	4,272,761	10.26	
기	타 특 별 회 계	28,833,088	27,401,090	1,431,998	5.23	

(단위: 처워)

○ **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** 870억 1,352만 6천원이 증액(12.63%)된 7,759억 1,2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음.

#### ○ 회계·소관별로 살펴보면

- ▶ 일반회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2,34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,
- ▶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,551억 8,7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7억 6,380만 6천원이 증액(10.50%)되었으며,
- ▶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3,449억 5,49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5억 4,496만 1천원이 증액(15.98%)되었음.
- ▶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9억 1,35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7,276만 1천원이 증액(10.26%) 되었으며,
- ▶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8억 3,30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3,199만 8천원이 증액(5.23%) 되었음.

#### 3. 예비심사 결과

#### 가. 의회운영위원회

O 세입·세출예산안: 해당 없음

O 세입·세출예산안 변동 조서: 해당 없음

O 세입·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 : 해당 없음

#### 나. 총무위원회

O 세입예산안

- 일반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- 특별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O 세출예산안

- 일반회계: 3건에 165,000천원을 감액하고,

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- 특별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O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: 해당 없음

O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

(단위: 천원)

연	ᆸ᠈ᄓᆏ	入	사 업 명		통계목 ㅇ그애		그에 가에		21 0	비
번	부서명	정 책	단 위	세 부	(부기명)	요구액	감 액	조정액	사 유	고
계		3건				175,000	▲165,000	10,000		
1	문화 관광과	문화예술 진흥	문화원 운영	문화원 사업활동 및 운영	민간경상사업 보조 (지역문화 활성화지원사업 • 향토사료 발간)	15,000	<b>▲</b> 5,000	10,000	과다책정	p171
2	체육시설 사업소	체육진흥	체육기반 조성	체육시설 관리	시설비 (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족구장 설치 사업)	140,000	▲140,000	0	불요불급	p241
3	체육시설 사업소	체육진흥	체육기반 조성	체육시설 관리	시설비 (고제파크 골프장 설치 실시설계)	20,000	▲20,000	0	불요불급	p241

O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: 해당 없음

O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: 해당 없음

#### 다. 산업건설위원회

O 세입예산안

- 일반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- 특별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O 세출예산안

- 일반회계: 5건에 763,000천원을 감액하고,

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- 특별회계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O 세입예산안 변동 조서

- 일반회계: 해당없음

- 특별회계 : 해당없음

O 세출예산안 변동 조서

(단위: 천원)

연번	부서명			경	통계목	요구액	증감액	조정액	사 유	비고
22	1.10	정 책	단위	세부	(부기명)	34, 7	орл	<u> </u>	7.1 11	
계		5건				763,000	<b>▲</b> 763,000	0		
1	경제 교통과	대중교통 시설	교통안전 시설확충	농어촌버스교통 카드시스템도입 지원	운수업계 보조금 (농어촌버스 교통카드단말 기교체지원)	140,000	<b>▲</b> 140,000	0	불요불급	7 p286
2	산림과	항노화 산업육성	항노화산 업육성및 지원	항노화산업 기반조성	시설비 (감악산 및 건흥산·아홉산 권역마스터플랜)	200,000	<b>▲</b> 200,000	0	불요불급	7 p308
3	환경과	자연환경	생태환경	야생동물피해예 방시설설치사업	민간자본사업 보조(야생동 물피해예방시 설설치사업)	173,000	▲173,000	0	불요불급	7 p316
4	농업 축산과	농촌복지 증진	축산업육성	한우스마트경매 시장구축사업	민간자본사업 보조(한우스 마트경매시장 구축사업)	150,000	▲150,000	0	불요불급	7 p352
5	행복 농촌과	행복농촌	식품산업 육성	농촌용복합산업 미중몰사업	민간자본사업 보조	100,000	▲100,000	0	불요불급	p368

O 세입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: 해당 없음

O 세출예산안 조건부 승인 조서: 해당 없음

**4. 주문사항**: 해당없음

#### 의안번호 제2021 - 75호

## -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-- 검토보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
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다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## 2. 2021년도 기금 변경(안)

#### 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: 재산과 기금의 설치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: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
#### 나. 주요내용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
  -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: 천원)

'20년도말	2021	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'21년도말 조성			
조성액(a)	수 입 (b)	지 출 ⓒ	증감 (d=(b-(c)	(e)=(d)+(a)	비고
152,560,000	23,583,598	60,000,000	△36,416,402	116,143,598	

#### -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'21년도말조성액	융자금 미회수채권	지역개발 채권	총 조성규모
ⓐ	⑤	미상환 잔액ⓒ	@=@+b-c
116,143,598	-	-	116,143,598

## O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현황

- 연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'20년도말	2021	년도 기금운용	'21년도말 조성액	_	
조성액@	수 입 (b)	지 출 ©	증감 (d=(b)-(c)	(e)=(d)+(a)	비고
326,911	57,360	46,600	10,760	337,671	

#### -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'21년도말	융자금 미회수채권	지역개발 채권	총 조성규모
조성액ⓐ	⑤	미상환 잔액ⓒ	@=@+b-c
337,671	-	-	337,671

## 3.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말 조 성 액	2021 기금운	년도 용 계획	2021년도말 조 성 액	증감
7 1 11 0	조 성 액 (a)	수 입 ⑤	지 출 ⓒ	(J=Q+(P-C)	e=d-a
합 계	152,886,911	23,640,958	60,046,600	116,481,269	△36,405,642
통합재정 안정화기금	152,560,000	23,583,598	60,000,000	116,143,598	△36,416,402
옥외광고 발전기금	326,911	57,360	46,600	337,671	10,760

#### 4. 검토의견

#### ■ 통합재정안정화기금<기획예산담당관>[p13]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6 조 및「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하는 등 지방 재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재원의 구성은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 정안정화계정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통합계정으로 이루어지며
-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재원 전입금 100억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고자 하며, 농업발전자금특별회계 예수금 781,888천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수금 81,230천원을 통합계정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 적인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

## ■ 옥외광고발전기금 <도시건축과>[p21]

- <u>옥외광고발전기금은</u>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 및「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. 3. 29. 조례(조례 제1967호)로 제정되었음
-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0년도말 326,911천원 대비 10,760천원 이 증액된 2021년도말 기금잔액은 337,671천원임
-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수입계획은 당초 3억 5,027만 1천원에서 국고보조금 3,400만원이 증가된 3억 8,427만 1천원이며, 지출계획은 당초 3억 5,027만 1천원에서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1,800만원, 지정게시대 보급사업 1,000만원,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1,000만원이 증가되어 3억 8,427만 1천원임
-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률 및 거창군 조례에 의하여 조성·운영 되어야 하며,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물 구입,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, 옥외광고, 불법무연고 간판철거, 안전점검지원사업 등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

## 5. 예비 심사결과

O 총무위원회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O 산업건설위원회 :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

## ● 관련법령 발췌

#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없다.

- 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- 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-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-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조례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
- 2. 예산의 심의 확정
- 3. 결산의 승인
- 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- 5. 기금의 설치·운용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처분
- 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- 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- 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.

-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 ·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